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225호
- 나. 제 안 자 : 허훈 의원(찬성자 32명)
- 다. 제 안 일 : 2024년 10월 16일
- 라. 회 부 일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국가가 주체였던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많은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서울은 도시 발전 경험, 1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방문객 및 거주자, 문화·예술·관광,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킬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음
- 실제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 재량으로 도시외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외교 전담부서도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우수 정책을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는 등 도시외교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음. 시장도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 및 인프라 구축 의지를 표명해 왔음
- 이에, 기존에 도시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해외 도시들과 실질적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각 조항에 '국제교류협력'을 '도시외교'로 변경함

다.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

마.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외교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달라진 서울시의 위상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조문의 “국제교류협력”을 “도시외교”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상위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며, 안 제14조에서는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의무 사항과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18조에서는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¹⁾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5장(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제16조~제21조를 삭제하고,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행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를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한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외국도시”를 “해외도시”로 변경하고,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우호협력협정”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의 변경과 자구수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개정사항이 있는 조항(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4조, 안 제18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1) (의안번호 11-2224)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 〉

조 항	개정 내용
제 명	· 조례의 제명 변경
제2조	·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용어의 추가
제4조	· 조제목 변경 및 시장의 책무 추가
제14조	·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의무 명시, 추진가능한 사업 추가
제18조	·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명시

나. 검토 내용

“입법취지 및 필요성”

-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공공외교법」에 따른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제5조~제17조)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제18조~제21조)이 혼재되어 있음
- 국제교류협력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외교 증진에 목적이 있는 반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무상 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그 정책 목표가 상이한 바, 각각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이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 제정안이 발의²⁾되어 있으므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공감함

2) (의안번호 11-2224)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비전 상호비교표 >

구분	지방자치 1.0	지방자치 2.0
의미	지방자치의 재개	자치분권의 실질화
주체	자치단체가 주체(단체자치)	주민이 주체(주민자치)
주민발의	간접발의	직접발의
자치권 근거	국민주권의 위임	주민주권에 기초
자치사무	집권적 사무배분과 협소한 사무 범위	보충성 원칙과 사무범위 확대 - 자치경찰사무, 국제교류협력 사무 등
지방재정	국세지원에 의한 의존관계	재정분권을 통한 중앙·지방 협력 관계
지위	자치단체	지방정부(정치적 의미)
지방의회의 지위	의결기관의 독립성 미흡 - 인사권 종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견제와 균형의 정상적 작동
기관구성	획일적 단일 구조 - 강단체장·약의회	기관구성의 다양성 수용 -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 가능
중앙-지방 관계	지도·감독 등 상하 관계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

출처 : 자치분권위원회

“주요 조문별 검토”

① 조례의 제명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국제교류협력 증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외교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은 자치법규의 규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고유한 이름에 해당하므로, 제명의 변경은 자치법규의 정체성 변경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기에 변경된 제명이 ▲자치법규 규율 내용 전체를 대표하는지, ▲규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시는 '17.4월 도시외교 분야의 첫 중장기(2017~2020) 종합계획인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기본계획에서 도시외교 기반조성을 위한 4대 기본방향과 12개 과제를 제시하는 등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이 지향하는 바는 도시외교 증진에 있음을 표명하였음. 또한, 최근의 외교 패러다임이 국가가 주체가 되는 정치·군사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외교로서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서의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³⁾

3) 도시외교 메커니즘과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2019

-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의 제명을 「도시외교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조문의 “국제교류협력”을 “도시외교”로 변경하는 것은 변화하는 외교 패러다임에 발맞춰서 국제사회에서의 서울시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함

② 정의(안 제2조)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는 조례 제명(“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다툼의 여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지방자치법」, 「공공외교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p> <p>< 신 설 ></p> <p>< 신 설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외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교류 등을 통해 외국 정부, 기관,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국과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말한다.</p> <p>2. “친선결연”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p> <p>3. “우호협력협정”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향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2. (생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란 시의 우수정책 및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해외도시들에게 정책자문, 기술이전, 사업참여 등의 형태로 공유하고 해당도시와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의 정의를 삭제하고 “도시외교”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의 의미를 수정하여 “도시외교”의 목적(외국정부·기관·국민과의 관계 강화, 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국과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따라, “도시외교”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외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 제2조는 현행 조례 제2장(친선결연 체결)의 “친선결연”과 “우호협력협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친선결연(자매결연)”과 “우호협력(우호교류)”을 정의하여 조례의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였으므로,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2조제3호 신설을 통해 “친선결연”과 “우호협력협정”을 정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친선결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공공외교법」 등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5)에 따라 “친선결연” 체결 시에는

4)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지방의회 의결 대상인 “친선결연”과 이와 구별되는 “우호협력협정”의 의미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음

-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5장(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을 삭제하고자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마땅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증진 관련 조례의 정의 조항 비교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p> <p>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국제교류협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p> <p>2. "<u>자매결연</u>"이란 도와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외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지식·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p> <p>2. "국제교류·협력"이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문화·제도·정책 등에 대한 지식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모든</p>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p>등을 말한다.</p> <p>3. "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란 시의 우수정책 및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해외도시들에게 정책자문, 기술이전, 사업 참여 등의 형태로 공유하고 해당도시와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p>	<p>3. <u>"우호 협력"이란 도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u></p> <p>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 · 연구소·비영리단체 · 협의체 등을 말한다.</p>	<p>과정을 말한다.</p> <p>3. <u>"우호교류"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친선관계로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다.</u></p> <p>4. <u>"친선결연"이란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체육·경제 등의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u></p> <p>5.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p>

③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조문의 제목을 현행 “시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의 조문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문의 제목은 해당 조문이 규정하는 주제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바, 조문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 -----.</p> <p>② 시장은 도시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 「공공외교법」 제4조에서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 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됨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은 「공공외교법」 제4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도시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시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 이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에 따라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가 자치사무로 규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다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공공외교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준용하지 않았으나, 도시외교의 실행력을 담보를 위해서는 이를 “시장의 책무”에 포함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⁶⁾가 있다고 생각함

「공공외교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안 제14조)

- 현행 조례 제3장은 장의 제목(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사업 추진)에 따라 하위 조문(제11조~제14조)에서는 “명예시민증 수여”, “해외통신원운영”, “도시의날 운영” 등 해외도시와의 개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규정과 함께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의 협력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은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협력 사항이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6)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외국의 우호교류 또는 친선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숙박비 할인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 이를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으로 확대하여 방대한 분야에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시장은 양 도시 시민과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위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숙박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상호 제공하는 사업 등을 해외도시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14조(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① ----- 실질적인 ----- 교류 협력-----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여 시의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2. 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해외 기관과의 인적 교류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의 각 호는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시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시와 교류협력을 진행하려는 해외도시마다 환경과 처한 상황, 원하는 교류협력 분야가 상이하므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의 4개 사업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⑤ 그 밖에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안 제5장)

- 현행 조례 제5장은 장의 제목(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에 따라 하위 조문(제18조~제21조)에서는 “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공적개발원조의 활용”,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⁷⁾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장의 장의 제목(그 밖에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을 안 제5장의 장의 제목으로 하고,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행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를 삭제하며, 안 제1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를 신설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장 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제5장 그 밖에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제18조(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함으로써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우수정책의 발굴 및 체계적 정리 2. 시 우수정책 해외홍보 체계 구축 3.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추진 대상도시 발굴 4.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5.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6.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	제1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외교에 협력하거나 시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 시킴으로써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의안번호 11-2224)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현행	개정안
<p><u>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u> <u>7.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u> <u>8.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사업</u> <u>9. 그 밖에 해외도시와 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시장은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u></p> <p><u>제19조~제22조</u> <u>제2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u> <u>제24조 (생략)</u></p>	<p>< 삭제 > <u>제19조(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도시외교추진과 활성화를</u> </p> <p><u>제20조 (현행 제24조와 같음)</u></p>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18조는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의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은 도시외교 측면에서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전략과 주요 사업 내용,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19조는 현행 조례 제23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은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므로 조문의 내용을 조의 제목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 하겠음
- 현행 조례 제22조는 “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에 관한 것으로 오랫동안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해외도시에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가 없어 실제 활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확인되며,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목적의 해외 파견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하고 있고, 교육 목적이 아닌 해외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⁹⁾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정비를 통한 현행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 8)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생략)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지방자치법」 및 「공공외교법」에 따른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¹⁰⁾을 통해 관리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은 최근의 공공외교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서 도시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는 변경된 조례의 제명에 따라 “도시외교”를 새롭게 정의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의 조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친선결연”과 “우호협력협정”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안 제4조는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도시외교의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해당 조항이 「공공외교법」 제4조를 준용하여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제4조제2항에서 명시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추후 이를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장(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을 삭제하고 제6장의 장의 제목(그 밖에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을 안 제5장의 장의 제목으로 하며,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해외도

10) (의안번호 11-2224)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현행 조례 제5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므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겠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가 해외도시</u>----- ----- ----- <u>도시외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p>	<p>1. "<u>도시외교</u>"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교류 등을 통해 외국 정부, 기관,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국과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말한다.</u></p>
<p><신 설></p>	<p>2. "<u>친선결연</u>"이란 <u>시와 해외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u></p>
<p><신 설></p>	<p>3. "<u>우호협력협정</u>"이란 <u>시와 해외도시가 향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다.</u></p>
<p>2. (생 략)</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p>3. "<u>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u>"란 <u>시의 우수정책 및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해외도시들에게 정책자문, 기술이전, 사업참여 등의 형태로 공유하고 해당도시와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u></p>	<p><삭 제></p>
<p>제3조(적용범위) <u>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u></p>	<p>제3조(적용범위) <u>도시외교</u> ----- -----</p>

현행	개정안
<p>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시의 책무) <u>시장은 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제5조(친선결연 등) ① 시장은 <u>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시장은 <u>외국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u></p> <p>② <u>외국도시에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u></p> <p>③ <u>친선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u>서울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u> 2. ~ 6. (생략) <p>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u>시장은 외국도시와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호 노력 의무만을 내용으</u></p>	<p>----- -----.</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u>----- -----.</p> <p>② <u>시장은 도시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u></p> <p>제5조(친선결연 등) ① ----- <u>도시외교 증진을 위하여 해외도시</u>----- ----- <u>우호협력협정</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 <u>해외도시</u>----- ----- ----- -----.</p> <p>② <u>해외도시</u>----- ----- -----.</p> <p>③ ----- -----.</p> <p>1. ----- <u>시</u> <u>의</u> -----</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 <u>해외도시</u> ----- ----- 「<u>지방자치법</u>」 제47<u>조</u>----- -----.</p>

현행	개정안
<p>로 하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p>	<p>-----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u> ----- -----.</p>
<p>제11조(명예시민증 수여) 시장은 시의 <u>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해외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u></p>	<p>제11조(명예시민증 수여) ----- <u>도시외교</u> ----- <u>우호 증진</u>----- ----- -----</p>
<p>제12조(해외통신원 운영) 시장은 세계 각 도시의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여 서울 시정에 활용하고 해외도시에 서울을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통신원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12조(해외통신원 운영) ----- ----- <u>정책 및 현지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현지와의 소통 및 시정에 활용하며, 해외도시에 시를</u> ----- -----.</p>
<p>제13조(도시의 날 운영) 시장은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 등과의 우호증진 및 서울 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도시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13조(도시의 날 운영) ----- ----- <u>시 거주</u> ----- -----.</p>
<p>1. 2. (생략) 3. 그 밖에 친선도시 등과의 <u>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u></p>	<p>1. 2. (현행과 같음) 3. ----- <u>도시외교</u> ----- -----</p>
<p>제14조(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시장은 양 도시 시민과 기업에게 <u>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위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숙박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상호 제공하는 사업 등을 해외도시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제14조(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① ----- <u>실질적인 교류 협력</u>----- <u>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u></p>
<p><신설></p>	<p>② 시장은 <u>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1. <u>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여 시의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u></p>

현행	개정안
<p>제5장 <u>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u></p> <p>제18조(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함으로써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우수정책의 발굴 및 체계적 정리 2. 시 우수정책 해외홍보 체계 구축 3.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추진 대상도시 발굴 4.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5.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6.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7.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사업 9. 그 밖에 해외도시와 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p> <p>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해외 기관과의 인적 교류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p>제5장 <u>그 밖에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u></p> <p>제1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외교에 협력하거나 시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20조(공적개발원조의 활용) ① 시장은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해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적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 원조 2.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3. 기술원조 4. 그 밖에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p><삭 제></p>
<p>제2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삭 제></p>
<p>제6장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지원 체계</p> <p>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도시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산하기관 및 공사·출연기관의 해외사무소 2.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3.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 <p>②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다.</p> <p>제2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p> <p>제24조 (생략)</p>	<p><삭제></p> <p>제19조(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도시외교 추진과 활성 화를</p> <p>제20조 (현행 제24조와 같음)</p>